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3. 2. 21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: 2023년 2월 9일
- 나. 발 의 자: 신홍식 의원 외 5명
- 다. 회부일자: 2023년 2월 16일
- 라. 상정일자: 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2. 20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신홍식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-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모집 규정 중 임기 만료된

자도 신규 모집 과정을 거쳐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
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 시 임기 만료된 자의 위촉 관련 규정 신설
(안 제17조제8항)
- 재위촉 금지 기간 단축(안 제17조제9항)
- 그 밖에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- 본 개정 조례안은
 - 주민자치기능 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
위원 모집 규정 중 임기 만료된 자도 신규모집 과정을 거쳐 위촉할 수 있도
록 변경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하고자
발의된 안건으로,
-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17조(구성 등) 제8항에서는 위원의 임기가 2회 연임으로 제한(제17조 제
7항)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 후 지원자가 모집인원
보다 부족한 경우 연임에 의해 임기 만료된 자도 신규모집 과정에 따라 위촉할
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,
 - 안 제17조(구성 등) 제9항에서는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와 자치회관의
운영취지·목적·기능 등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의 2년 이내

재위촉 금지에서 1년 이내 재위촉 금지로 기간을 단축하되, 품위손상 및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사유로 위촉해제 된 경우에는 기존의 2년 이내 재위촉 금지 기간을 유지하도록 규정을 변경함.

○ 검토 결과

- 현재 우리 구는 6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, 2023년 5월까지 5개 동에서 연임에 의한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어 일부 동에서는 위원회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임.

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만료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 다만, 본 조례개정의 취지인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, 장기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신흥식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5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2월

발의자 : 신흥식, 000(0인)

1. 제안이유

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 규정 중 임기 만료된 자도 신규 모집 과정을 거쳐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임기 만료된 자의 위촉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17조)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3. 2. 7. ~ 2023. 2. 11.)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주민자치기능”을 “주민자치 기능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“자치회관”이란”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(이하 “자치회관”이라 한다)이란”으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주민자치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조장”을 “진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행·재정지원”을 “행정·재정지원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자치회관는”을 “자치회관은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치회관는 주민자치기능”을 “자치회관은 주민자치 기능”으로, “주민자치기능을”을 “주민자치 기능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지역복지기능”을 “지역복지 기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15조 중 “주민자치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제3호 중 “복지활동”을 “자치활동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위원은”을 “위원회는”으로, “이하”를 “이하의 위원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1/3”을 “3분의 1”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 후 지원자가 모집인원보다 부족한 경우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된 자도 신규모집 과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.

제17조제9항(종전의 제8항) 중 “제5호”를 “제4호”로, “2년”을 “1년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0조제1항제5호에 의한 사유로 위촉 해제된 경우 그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.

제21조제1항 중 “1/3이상의”를 “3분의 1이상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17조제8항의 신설규정 및 제1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게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<u>주민자치기능</u>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<u>자치회관</u>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·복지·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.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제3조(원칙) 자치회관과 <u>주민자치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주민자치기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(이하 “자치회관”이라 한다)이란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원칙) -----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

동의 조장

3. (생략)

4.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
행정·재정지원

5. (생략)

제4조(설치 등) ① 자치회관은 동
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
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
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내에 있
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
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
다.

② (생략)

제5조(기능) ① 자치회관은 주민
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
· 복지·편익기능 및 주민자치
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
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·2. (생략)

3. 건강증진, 마을문고, 청소년
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

4. ~ 6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제6조(시설 및 프로그램) ① 구청
장은 자치회관이 제5조에서 규
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

-- 진흥

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행정·재정지원

5.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설치 등) ① 자치회관은 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조(기능) ① 자치회관은 주민
자치 기능 -----
----- 주민자치
기능을 -----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----- 지역복지 기능

4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시설 및 프로그램) ① 서울
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
청장”이라 한다)-----

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
과 프로그램(이하 “시설 등”이
라 한다)을 갖추어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15조(설치) 자치회관 운영에 관
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
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
둔다.

제16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
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
다.

1. 2. (생략)

3. 주민의 복지활동 강화에 관
한 사항

4. 5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제17조(구성 등) ① 위원은 위원
장, 부위원장, 각 1명을 포함하
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
하되, 해당 지역 선거구에서 선
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
문으로 하고 별도로 2명 이내의
고문을 둘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
선정함에 있어서 교육계, 언론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설치) -----

----- 위원회 -----
-----.

제16조(기능) ①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자치활동 -----

4. 5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구성 등) ① 위원회는 ---

----- 이하의 위원 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계, 문화·예술계, 관계, 경제계,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1/3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~ ⑦ (생략)

<신설>

⑧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또는 제2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. <단서 신설>

⑨ ~ ⑪ (생략)

----- 3분의 1 -----

-----.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 후 지원자가 모집인원보다 부족한 경우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된 자도 신규 모집 과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.

⑨ -----
----- 제4호 -----

----- 1년 -----
---. 다만, 제20조제1항제5호에 의한 사유로 위촉 해제된 경우 그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.

⑩ ~ ⑫ (현행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와 같음)

<p>제21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<u>1/3이상의</u>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제21조(회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3 <u>분의 1이상</u> ----- -----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--	--